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2,832,403	15,684,972
일반회계	484,384,761	14,531,543
특별회계	38,447,642	1,153,429
기타특별회계	38,447,642	1,153,4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22,476	93,674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74,486	2,235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5,062,672	151,880
원외탕전원특별회계	451,242	13,537
수질개선특별회계	9,953,951	298,6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9,299	20,379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9,491,983	284,759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88,709	29,66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142,276	94,268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99,542	2,9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23,000	18,69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758,006	142,740

제 2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17,810,347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12,035,347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